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18가단5226025 판결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전준호, 정승식, 홍영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오창완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필리핀에서 2008. 8.경부터 2019. 2.경까지 'C(제1센터)' 및 'D(제2센터)'라는 상호로 어학원(이하 위 제1, 2센터를 합하여 '필리핀 소재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7.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모집한 유학생들을 필리핀 소재 어학원에 알선하고 유학생 또는 유학생을 소개한 유학원으로부터 교육비, 숙식비 등을 지급받아 필리핀 소재 어학원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표의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필리핀 소재 어학원 주식 20%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을은 주식양도대금으로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지불방식은 8,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예치하고, 1,450만원은 2015. 10. 21.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1억 원은 2015. 11. 10.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경영]

갑은 을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을 위임한다.

제7조 [수익분배]

을은 매달 20일 필리핀 소재 어학원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받는다. 순수익은 학비 및 기숙사비용 매출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제한 금액이며,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단, 현지에서 발생한 유틸리티비용, 비자연장비용, SSP비용, 픽업&샌딩에 대한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갑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E 어학원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만 포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수익분배 규정에 따라 필리핀 소재 어학원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유학생 또는 유학원으로부터 교육비, 숙식비 등을 지급받아 필리핀 소재 어학원으로 송금하고, 필리핀 소재 어학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송금받은 돈에서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필리핀 소재 어학원의 순이익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교육비, 숙식비 등을 자신의 처 F, 형 G, 직원 H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하면서 마치 필리핀 소재 어학원의 순이익이 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학생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 등의 은행계좌로 교육비, 숙식비 등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필리핀 소재 어학원의 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은닉하거나 이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수익분배 규정을 위반하여 필리핀 소재 어학원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